

울 산 지 방 법 원

제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18052 보증채무금
원 고 주식회사 A종합건설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국제 담당변호사 이성렬
피 고 C공제조합
대표자 이사장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김소연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3,237,9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

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주택사업, 택지조성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¹⁾ 그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계약보증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7.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혁신도시 내 'A로얄듀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 : 2011. 10. 7.부터 2013. 10. 31.까지
 - 공사금액 : 5,632,379,088원
 - 계약보증금 : 10%, 지체상금율 : 0.2%
 -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1) 위 법 부칙(제5230호, 1996. 12. 30.) 제6조에 따라 구 C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는 위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2. 도급인과 사전에 협의 없이 수급인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 3. 준공기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도급인은 위 각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 대하여 E의 채무를 보증금액 563,273,909원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는 다음과 같다.

	보증사고	보증금 지급한도
계약보증 차액보증	보증기간 내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법령으로 정한 금액
손해배상보증	보증기간 내에 계약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무 불이행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금액

라. 한편, 원고는 2012. 1. 13. E에게 같은 날 작업인부가 출력되지 않아 작업이 중단된 상태로 보인다는 이유로 현장 작업을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3일 후인 같은 해 1. 16. 재차 작업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같은 해 1. 17. E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는 2012. 1. 13.경 공사에 필요한 자재공급계약 등을 시행하지 않고, 작업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 17. E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E는 원고에 대하여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에 따라 원고에게 E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인 563,237,909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해지사유인 '일방적인 공사중단'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사도급사유의 약정해지사유로서 공사중단을 정한 경우에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기간동안 공사의 정지상태가 계속되어 예정된 공사기간 안에 완공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일시적인 공사 정지에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사유로서 공사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1. 17.자로 E에게 공사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4호 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예정된 공사기간이 약 2년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사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E의 공사 중단 기간은 불과 4일에 불과한 점(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중단시점은 2012. 1. 13.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4일 후인 같은 해 1. 17. 해지를 통보하였다), ② E가 진행하던 이 사건 공사는 1일 간

격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일 단위를 주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E는 2011. 12. 1.경부터 2012. 1. 11.경까지 비교적 계속적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왔던 점(갑 제4호증의 1, 2.), ③ E의 작업자들은 2012. 1.경 E가 원고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을 제3자가 가압류할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같은 해 1. 11.경 원고에게 노무비 직불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해 1. 13.경 원고 및 E에게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이에 E 측에서는 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하였고, 작업자들에게 '시기가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노무비는 꼭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여 현장 복귀를 약속받았으며, 이에 따라 2012. 1. 19.경 공사를 재개하고자 원고에게 요청하기도 한 점(증인 F의 증언), ④ 원고는 위와 같은 E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2012. 1. 31. 주식회사 용마루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중단은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사유로서의 '공사중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2012. 1. 17.자 해지는 적법한 해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태식

 판사 이상욱

 판사 김은영